

의안번호	제892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2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김현문, 이상식, 김종필,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박재주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 계층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 및 자격 규정(안 제5조)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시간 및 활동 기준 규정(안 제6조)
- 일하는 밥퍼 사업 봉사활동실비 지급 규정(안 제7조)
-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비용 지원 규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 및 협약 규정(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
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

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
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 대상 등) 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

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
 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
-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참여 시간 등)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활동 참여는 1일 1회로 하며, 단체작업장은 2시간 이상,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참여자 활동 관리)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출석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
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

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협약)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

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통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고독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으로 노인문제, 인력 부족문제 해결

2. 비용 발생 요인

-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사업비등 소요경비 지원
-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하여 실비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 조례안 제9조(비용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기타 작업장 : 4,751,792천원]

- 위탁(사회서비스원) 기관 운영비 : 52,489천원(도비^{100%})
 - (인건비) 3,771천원 × 1명 × 11개월 = 41,489천원
 - (운영·사업비) 1,000천원 × 11개월 = 11,000천원
- 운영사업단 운영비 : 3,021,358천원(도비 / 고향사랑기금 포함)
 - 인건비* 31명(1,138,659천원), 수당** 130명(500,500천원), 운영·차량비(1,349,200천원)(도비^{100%} / 고향사랑기금 포함), 사업비(33,000천원)
 - * 운영사업단 5명, 배송인력 13명, 전담인력 13명, 작업소장 130명 / 작업장 130개소 기준
- 기타 작업장 활동 실비 : 1,677,945천원(도비^{100%}) / 462명

[시군 경로당 : 2,115,200천원]

- 시군 경로당 운영비 : 수당* 16명(17,600천원), 운영비(97,600천원)(도비^{40%}, 시군비^{60%})

* 경로당 수행인력(16명 / 경로당 5개소 당 1명 배치)

- 시군 경로당 활동 실비* : 2,000,000천원(도비^{40%}, 시군비^{60%}) / 1,000명

나. 추계 결과

- ('25년) 14,365,687천원 ('26년 이후) 매년 인건비·물가상승률(3%) 반영

* 향후, 참여자수에 따라 운영비, 활동실비 증액 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후원금 확보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세출	35,320,810	6,866,992	6,962,664	7,061,206	7,162,702	7,267,246
기타 작업장	24,709,197	4,751,792	4,844,008	4,938,990	5,036,820	5,137,587
위탁 기관 운영비	278,672	52,489	54,064	55,686	57,356	59,077
운영사업단 운영비	16,040,800	3,021,358	3,111,999	3,205,359	3,301,519	3,400,565
활동실비	8,389,725	1,677,945	1,677,945	1,677,945	1,677,945	1,677,945
시군 경로당	10,611,613	2,115,200	2,118,656	2,122,216	2,125,882	2,129,659
시군 경로당 운영비	611,613	115,200	118,656	122,216	125,882	129,659
활동실비	1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재원 조달	35,320,810	6,866,992	6,962,664	7,061,206	7,162,702	7,267,246
도비	28,953,842	5,597,872	5,691,470	5,787,876	5,887,173	5,989,451
시군비	6,366,968	1,269,120	1,271,194	1,273,330	1,275,529	1,277,795